

한국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인권 질의서

질문	이재명(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
1. 국제인권조약의 채택, 비준 및 이행				
1-1. 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선택의정서는 개인이 해당 유엔 기구에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귀하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CESCR) 및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 각각에 대한 개인 진정서 제출을 허용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선택의정서 비준을 지지하겠습니까?	답변 없음	답변 없음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에는 동의하며, 진정 절차가 남용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접근하겠다.	네
1-2. 강제실종의 방지, 제재 및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포괄적 국내입법의 채택을 지지합니까?	답변 없음	답변 없음	강제실종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예방과 구제 수단의 정비는 필요하다고 본다.	네
1-3. 한국은 침략범죄, 신규 당사국에 대해 7년간 전쟁범죄 면제를 허용하는 제124조의 삭제, 전쟁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대한 6개 개정안 중 어느 하나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귀하는 6개 개정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비준하는 것을 지지합니까?	답변 없음	답변 없음	부분적으로 그렇다. 대한민국의 외교적·군사적 현실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되, 인도주의적 기준 강화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네
2. 북한인권의 증진				
2-1.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특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과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겠습니까? 귀하의 정당은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겠습니까?	민주당은 평화, 민주,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한국에서 지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는 필요하며, 제도적 공백도 보완하겠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당연히 하겠다.	네
2-2.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은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이나 공동 초안 작성국이 될 것입니까?	위 2-1 답변 참조.	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는 중요하며, 공동 제안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남북관계를 살피며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3.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한인권증진 및 남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 특히 김정숙,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위 2-1 답변 참조.	네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인도적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의사를 피력하겠다. 남북자와 억류자 문제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네
2-4.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권고하였듯이 인권침해의 조사기록과 각국에 대한 접근 가능한 정보의 방송을 포함하여 북한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글로벌 북한인권기금을 설립하겠습니까?	위 2-1 답변 참조.	잘 모르겠습니다.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며, 정부는 재정적 지원보다는 규제 완화와 국제 협력 플랫폼 조성에 집중하겠다.	남북관계를 살피며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5. 사법 및 다른 절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와 증거를 수집, 통합, 분석, 보존하는 독립된 책임규명 메커니즘의 설치를 지지하겠습니까?	위 2-1 답변 참조.	답변 없음	책임 규명은 미래의 정의를 위한 전제임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증거 기반 접근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네
3. 사형제				
3-1. 한국은 1997년 12월 마지막 사형 집행이 있었지만 여전히 법	답변 없음	답변 없음	그러한 주장에는 반대한다. 중대한 강력범죄에 대해선 사형제를 유지	네

적으로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정부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기 위해 여러 범죄에 대해 사형을 규정한 모든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미 지금도 사형제는 존재하지만 집행되지 않는 점에서 실질적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더 나아가 사형제를 전부 폐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3-2. 귀하의 정부는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겠습니까?	답변 없음	답변 없음	현실적인 사법환경과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네
3-3. 귀하는 광복절 특사, 신년 특사 또는 다른 기회에 사형수 59명 중 일부 또는 전부, 특히 20세기에 사형이 선고된 사형수에 대해 종신형으로의 감형을 고려해보겠습니까?	답변 없음	답변 없음	개별 사건의 경과와 사법 판단을 존중하면서 인도주의적 고려는 할 수 있다.	네
3-4. 한국은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위배될에도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는 국가(states)와 법역(jurisdictions)으로 사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는 사람의 추방 및 인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정부는 사형 선고 위험이 있는 경우, 추방 및 인도를 멈추겠습니까?	답변 없음	답변 없음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국제 인권 기준상 지켜져야 하며, 사형 선고 위험이 있는 경우 인도를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	네
4.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				
4-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남성의 중위소득 대비 여성의 중위소득 차이라 정의되는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3년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귀하는 성별 임금 격차와 그 밖의 직장내 차별관행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채택하겠습니까?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답변 없음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합리적 기준에 따른 차별 해소 정책을 추진하겠다.	네
4-2. 귀하는 정부, 기업, 노조, 시민사회 고위직에 여성의 평등한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겠습니까?	위 4-1 답변 참조.	답변 없음	수적 평등이라면 반대하고, 기회의 평등이라면 공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율성과 실력 중심의 선발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본다.	네
4-3. 피해자의 사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접근을 보장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물어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행을 퇴치하고 기술 매개 젠더 기반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겠습니까?	교재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여성 1인 가구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을 위해 범부처가 협의해 대응하겠습니다.	답변 없음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는 기본 원칙이며, 기술 기반 성범죄 대응도 강화하겠다.	네
4-4. 증가 추세인 여성혐오 감정과 사회 분극화에 대한 대응으로 성차별적 태도를 끝내 젠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고, 여성에 대한 증오 발언과 차별을 퇴치하며, 여성가족부를 강화시키겠습니까?	위 4-1 답변 참조.	답변 없음	여성가족부는 폐지하되, 관련 기능은 복지부와 인권위 등으로 이관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 증오발언이나 불법 행위는 엄단하겠다.	네
4-5. 성교육, 피임 및 낙태를 포함하여 성 및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대한 안전하고, 시의적절하며,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및 행정 조치를 증진시키겠습니까?	위 4-1 답변 참조.	답변 없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성교육 및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은 필요하며, 관련 제도는 정비하겠다.	네
5.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5-1.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범죄화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성인 남성 동성애자간 상호 동의 하 성관계를 기소하는 데 원용되어 왔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의 개정 또는 폐지를 지지합니까?	답변 없음	답변 없음	사적 합의에 기초한 성적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어야 하나, 군 기강과 병영 현실도 함께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	네
5-2.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금지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겠습니까?	답변 없음	답변 없음	차별은 해소되어야 하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좋은 대안일 수 없다. 표현의 자유, 역차별 우려 등 논란이 많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네

5-3. 동성결혼 합법화 또는 동성 시민결합을 지지하겠습니까?	답변 없음	답변 없음	동성애의 경우 개인 성향의 문제일지 몰라도, 동성혼은 제도의 문제이므로 많은 사회적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네
5-4. 성적합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허가한 하급심 결정을 지지합니까? 여전히 성적합수술을 요구하는 대법원 “지침”의 개정을 지지합니까?	답변 없음	답변 없음	회적 합의와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급심 결정을 지지합니다.

6. 기업인권과 노동권

6-1. 2023년 9월 한국 국회에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한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 이러한 유형의 법안으로는 최초였습니다. 귀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지지합니까?	답변 없음	답변 없음	인권과 환경 기준은 중요하나, 기업에 과도한 행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설계돼야 한다고 본다.	네
6-2. 국회에 제출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여 참가자, 목적, 절차, 수단 관련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특허 감원 합의 파업을 포함시키고, 독립계약자와 현재 피고용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다른 특별한 유형의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허용할 것입니다. 귀하는 “노란봉투법”을 지지합니까?	답변 없음	답변 없음	그렇지 않다. 쟁의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면 기업의 정상 운영과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네
6-3. 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1957(제105호) 비준을 지지합니까?	답변 없음	답변 없음	그렇다. 강제노동은 근본적으로 폐지돼야 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동의한다.	네
6-4. 귀하는 강제노동수입제한법 제정을 지지합니까?	답변 없음	답변 없음	강제노동 제도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무분별한 보호 무역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네

7. 난민, 비호신청자 및 다른 이주민

7-1. 2024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07% (결정 9,782건 중 105건)에 불과했으며, 중국 출신 비호신청자의 난민 인정률은 0에 가깝습니다. 귀하는 전체적으로 및 중국 출신 비호신청자의 난민 인정률을 개선할 계획입니까?	답변 없음	답변 없음	난민 심사는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나, 악용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밀하고 신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네
7-2. 이의신청을 다루는 법무부 난민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난민의 출신국 상황을 평가하는 국가정보원의 대표를 포함합니다. 귀하는 국정원 인사의 난민위원회 참여를 끝내는 것을 지지합니까?	답변 없음	답변 없음	부분적으로 그렇다. 난민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국가안보에 민감한 일부 사례에 대해선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네
7-3. 귀하는 외국인 보호소에서 이주민에 대한 고문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채택하겠습니까?	답변 없음	답변 없음	외국인 보호소 내 인권침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구체적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다.	네
7-4.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이 새로 한국에 오는 북한 난민에 대해 한국이 강제송환금지원칙, 가능한한 가장 짧은 구금 기간, 변호인 조력권과 사법심사를 포함한 절차적 보호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귀하는 이들 권고의 이행을 지지합니까?	답변 없음	답변 없음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국민으로 간주되며, 절차적 권리 보장과 국제 기준 준수는 당연한 책무라고 본다.	네

8. 기후 정의

8-1. 귀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목표인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수준 대비 35% 감축하는 것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2030 NDC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도 2040년까지 조기폐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업자에 국가책임 강화, 중대피해 재난 보상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되는 기후위기 피해에 대한 안전메트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준수해 기	답변 없음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고 국제 기준에 대해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실현 가능한 기술과 산업 경쟁력이 그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	---	-------	---	---

	후위기 대응과정에서 노동자들과 피해지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정의가 기후위기대응의 전제조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 귀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것이 헌법불합치라는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합니까?	답변 없음	답변 없음	중장기 목표 설정은 필요하나, 헌법적 판단에 따른 입법 의무는 존중하되 과도한 규제나 비현실적 기준이 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본다.	Yes